

제30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립니다.

현행 조례는 적용대상 범위에 ‘사무위탁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 제외되어, 상기 시설  
근로자 보호 및 시정 조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현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시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있던

‘사무위탁기관’ 과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을  
추가하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조치  
절차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법 취지를 제고  
하고자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